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7. 5.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폐지하므로 인하여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하여 부칙에 3개월간의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사기를 진작코자함

2. 수정 주요내용

- 부칙 조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면서 2007. 5.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2007. 8. 31일까지 3개월간의 경과 규정을 두도록 수정함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경상북도 총무과-4263(2005.4.2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관련 복부조례 개정지침 이첩 시달
- 경상북도 총무과-7124(2005.7.20)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준안)이첩 송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시행일)로 하고,
안 부칙에 제2항(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u>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u>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 「지방공무원법」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으로 한다.

제11조 “소속기관이”를 “소속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 “ 「공무원증 규칙」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14조”를 “제14조”로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도표안의 연가일수를 삭제하고 괄호안의 연가일수를 적용한다.

“∴연가일수 란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각각1일에”를 “각각 1일을”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제27조”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1호 “병역법”,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각각 “「병역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 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한다.

제23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0항은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4장(제26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27조 및 제28조)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